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2-9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9월 일
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강서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법 주·정차 감소,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등 경제적·사회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(안 제6조의6)

- 가.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
- 나.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,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
- 다.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주차장법」 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
- 2)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
- 3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2. 9. 14. ~ . 10. 4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3) 규제사전심사: 해당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6(공유주차구획의 운영)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,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6조의6(공유주차구획의 운영) ①</u> <u>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</u> <u>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</u> <u>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</u> <u>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</u> <u>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</u> <u>혜택,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</u> <u>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</u> <u>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</u> <u>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</u> <u>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</u> <u>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</u> <u>에 따른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4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김성환
연 락 처	02-2600-4245

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
평가번호	2022-26				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급	행정7급	성명	김완주
입안주무부서	주차관리과	통보(조치)일		2022. 9. 28.	
관련조문		검토결과		조치사항	
개정 조례안 전부		원안 동의		없음	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강서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법 주·정차 감소,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등 경제적·사회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(안 제6조의6)
- 가.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
 - 나.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,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
 - 다.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.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22A서울강서027		
정책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
	부서명	주차관리과	
	담당자명	김성환	전화번호 02-2600-4245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2년 9월 15일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주차관리과)	<p>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'은 강서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법 주·정차 감소,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등 경제적·사회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.</p>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p>■ 개선사항 없음 □ 자체개선안 동의 □ 개선의견</p> <p>'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.</p> <p>다만, 제6조의4의3항과 관련하여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표식을 분홍색 실선으로 정하고 있으나, 이는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'일반주차구획과 다른 색상의 실선으로'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.</p> <p>또한,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안전과 더불어 돌봄대상자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일 경우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일정 비율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4항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함.</p>		
	<p>※참고예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[시행 2021. 12. 30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265호, 2021. 12. 30., 일부개정] 제25조의2(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(생략)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%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. ③~④(생략)</p>		
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(담당자/연락번호 : 안소현/02-2600-6762)</p> <p>주차관리과장 귀하</p>	

□ 「주차장법」

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 없이 주차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6. 8., 2013. 3. 23., 2016. 1. 19., 2020. 6. 9.>

1.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
 2.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
 3.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
-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0. 3. 22.]

□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

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7. 27.>

1.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

한 경우

2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 자동차를 위한 경우
3.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 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5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(이하 이 항에서 “전용주차자동차”라 한다)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수 있다. <신설 2021. 4. 16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1. 4. 16.>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
제6조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인근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(단,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,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, 2.5톤 이상 화물차는 제외함)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.(개정 1999. 9.30, 2007.8.14., 2013.8.7)

②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, 이용대상차량, 운영시간,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한다.

③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(개정 1997. 1. 8)